

##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99. 7. 2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이상문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만화관계자, 시의원, 관계공무원 등으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계획이나 주요 사안을 심의하여 만화정보센터 운영방안을 개선하고,
- 만화정보센터의 사업 집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적절한 배분으로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며 사무국 직원의 호칭을 보조원에서 사무원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만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신설
- 만화정보센터 사무원을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변경
- 만화정보센터 보조원을 사무원으로 변경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직원 2인에서 5인으로 수정하는데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?	○ 상설전시관의 세미나실, 기획전시관, 창작지원실, 만화정보교육실 등 인원이 필요하여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.
○ 업무가 늘어나면 추가로 조치하여도 되지 않는지요?	○ 현재 7개 파트가 운영되고 있어 5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.
○ 조례가 통과되어야 사람을 뽑니까?	○ 네, 예산도 추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.
○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?	○ 만화관계 전문가, 시의원,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에 꼭 시의원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?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58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만화관계자, 시의원, 관계공무원 등으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만화정보센터의 사업 계획이나 주요사안을 심의하여 만화정보센터 운영방안을 개선하고,
- 만화정보센터의 사업집행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적절한 배분으로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하고자 하며,
- 만화정보센터 사무국 직원의 호칭을 보조원에서 사무원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만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신설(안 제4조)
- 만화정보센터 사무원을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변경(안 제6조)
- 만화정보센터 보조원을 사무원으로 변경(안 제6조, 제8조, 제11조)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4조 내지 제15조”를 “제5조 내지 제16조”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만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만화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분기 1회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별도 개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에서는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계획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만화정보센터 운영에 반영한다.

④위원회 참석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”를 “만화정보센터를 대표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 조목 및 내용중 “보조원”을 “사무원”으로 하고 “2인”을 “5인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조목 및 내용중 “보조원”을 “사무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중 “보조원”을 “사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